

警察への通報 (110番電話)

どろぼうや暴力の被害、交通事故にあったときは、警察署に110番電話(局番なし、無料、24時間体制)してください。

110番電話

「110」に電話をして、

- ① 何が
- ② いつ
- ③ どこで

あったのかを話してください。

携帯電話から通報するときは、通報場所、

携帯電話番号を必ず伝えてください。

住所がわからないときは、目印となる

建物や目標物を伝えてください。通報後

も電源を切らないでください。

交番

各地域には交番があり、警官がいます。

交番では、地域のパトロール、犯罪防止、

家出人や落とし物の届出等を担当しています。

경찰에 연락하기 (110 번)

강도나 폭력,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에는 국번없이 110 번으로 경찰서에 연락해 주십시오.

(무료, 24 시간 체제)

110 번 전화

110 번에 전화를 걸어

- ① 무엇이
- ② 언제
- ③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때에는, 전화를 걸고 있는 장소와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주소를 모를 때에는, 찾기 쉽도록 주변의 주요 건물이나 목표물 등을 알려 주십시오. 통보 후에도 전화의 전원을 끄지 말아 주십시오.

파출소

각 지역에는 파출소가 있으며,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지역의 순찰과 범죄방지, 가출신고와 분실물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わす 忘れ物・お 落とし物をしたら

すぐに警察署か交番に届けましょう。クレジットカードやキャッシュカードなどをなくしたときは、急いで発行元に連絡し、第三者の利用を差し止めましょう。運転免許証、健康保険証、在留カード、パスポートなどをなくしたときも、至急発行元に届け出てください。

の 乗り物の中でなくしたとき

次の所に問い合わせしてみましょう。その際、行き先や時間、降りた所などわかれば探しやすくなります。

- ・電車：駅(又は駅員)
- ・バス、タクシー：会社の営業所

たても の 建物の中でなくしたとき

その建物の管理部署に問い合わせましょう。貴重品は警察に届けられますが、それ以外の物はしばらくの間、保管してくれ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

お 落とし物を拾ったら

なるべく早く近くの交番や警察署に届けます。乗り物内やデパートなどで拾ったときは、従業員に届けましょう。

분실물 및 유실물

바로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아가서 신고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는 재빨리 발행처에 연락하여 제 3 자의 이용을 막읍시다.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체류 카드, 여권 등을 잃어버렸을 때도 재빨리 발행처에 신고해 주십시오.

교통기관 이용 중에 분실한 경우

아래의 장소로 문의해 보십시오. 문의시에는 행선지와 시간, 내린 곳 등을 함께 알려주시면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차：역 (또는 역무원)
- ・버스・택시：각 회사의 영업소

건물 안에서 분실한 경우

건물의 관리부서로 문의합니다. 귀중품은 경찰에 신고되지만, 그 외의 물건은 당분간 보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되도록 빨리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교통기관 안이나 백화점 등에서 습득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신고합니다.

交通事故

交通事故を起こしたとき

1. すぐに傷ついた人を手当てし、道路外など安全な場所へ移動します。けががひどい場合は、救急車(119番電話)を呼びましょう。
2. 警察(110番電話)へ連絡をして、指示を受けてください。
3. 加入している保険会社へ連絡します。連絡が遅くなると保険で処理がでなくなる場合があります。

交通事故の被害にあったとき

1. すぐに警察署に届けます。事故の届出がされていないと、保険金支払請求に必要な交通事故証明書が受けら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
2. 運転していた人と、車の持ち主(運転していた人が車の所有者でない場合)の住所、氏名、車両番号、保険の加入年月日、保険会社名を確認します。
3. 大きなけがではなくても、症状が悪くなることもあるので、医師の診断をうけておきましょう。

交通事故

交通事故を 일으켰을 때

1. 부상입은 사람을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도로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구급차(119 번)를 부릅니다.
2. 경찰(110 번)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으십시오.
3. 가입한 보험회사로 연락합니다. 연락이 늦어지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交通事故를 당한 경우

1.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고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보험금 지불청구에 필요한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운전했던 사람과 자동차의 소유주(운전했던 사람이 자동차의 소유주가 아닐 경우)의 주소, 이름, 차량번호, 보험가입 년월일, 보험회사명을 확인합니다.
3. 큰 부상이 아니라도 증상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도록 합시다.